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범위로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① 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 및 수급자(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복지용구 급여는 연 한도액(160만원) 적용을 받으며,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1년을 적용한다.

※ 연 한도액(16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그 이용료는 총 급여비용 중 최대 15%~0%에 대한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 복지용구를 이용할때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이용한도	구 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경감수급자	91%	9%
		94%	6%
100%중 91% 또는, 96%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 또는 6%는 본인 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 후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금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160만원인 연한도 금액초과시 그 초과금액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공단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가.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나.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 비용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다. 대여 기간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4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주요내용	구분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는 대여와 판매로 구분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수급자가 구매 또는 대여한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 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

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제품 대여 및 구매 이용료

등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등으로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될 경우 통지할 의무가 있다.

【계약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4.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5.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 서면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